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전번호 제2018 - 55 - 467호

안전명 대표번호 카드결제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

피심인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주)(사업자등록번호 : 113 - 85 - 2108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8
대표이사 박준석

의결연월일 2018. 10. 12.

주 문

1.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 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호 처리 시 부과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4. 피심인은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내지 제3항에 대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금 액 : 4,7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사실

엔에이치엔한국사이버결제㈜(이하 '피심인'이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신고일: '13. 7. 3.)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가맹점에 제공하여 가맹점의 시내·시외전화서비스를 매개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매출액은 아래와 같다.

< 최근 3년간 매출액 현황 >

(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3년간 평균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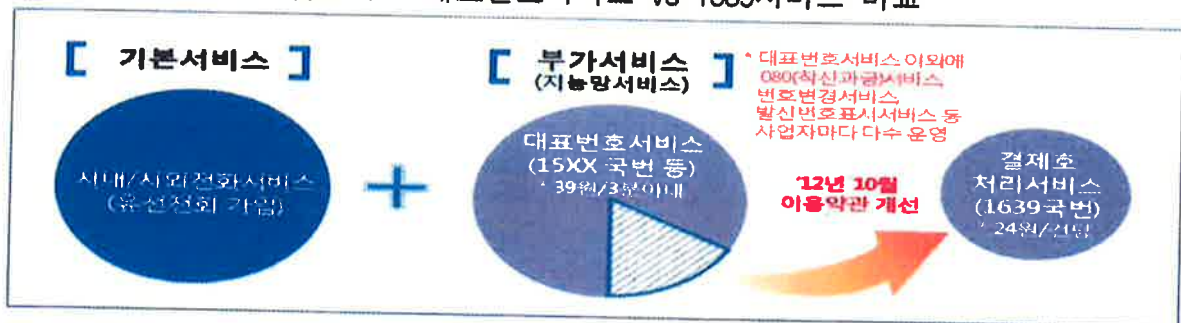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배경

시내·시의전화 통신망을 이용하여 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형태의 지능망서비스인 '대표번호1)서비스(39원/3분, 부가세 제외)'보다 상대적으로 이용요금이 저렴한 '결제호처리서비스(24원/건당, 부가세 제외, 이하 '1639서비스'라고 한다)' 요금제가 '12년 10월 출시되었으나,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없다는 국회 지적 및 언론 보도²⁾ 등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18. 5. 11일 피심인을 대상으로 '12년 10월부터 '17년 12월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번호서비스 및 결제호처리서비스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가 없는지에 대해 관련 서비스 가입 신청서, 협약서 등의 자료 분석과 담당자 인터뷰 등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참고 1 > 대표번호서비스 vs 1639서비스 비교



2. 행위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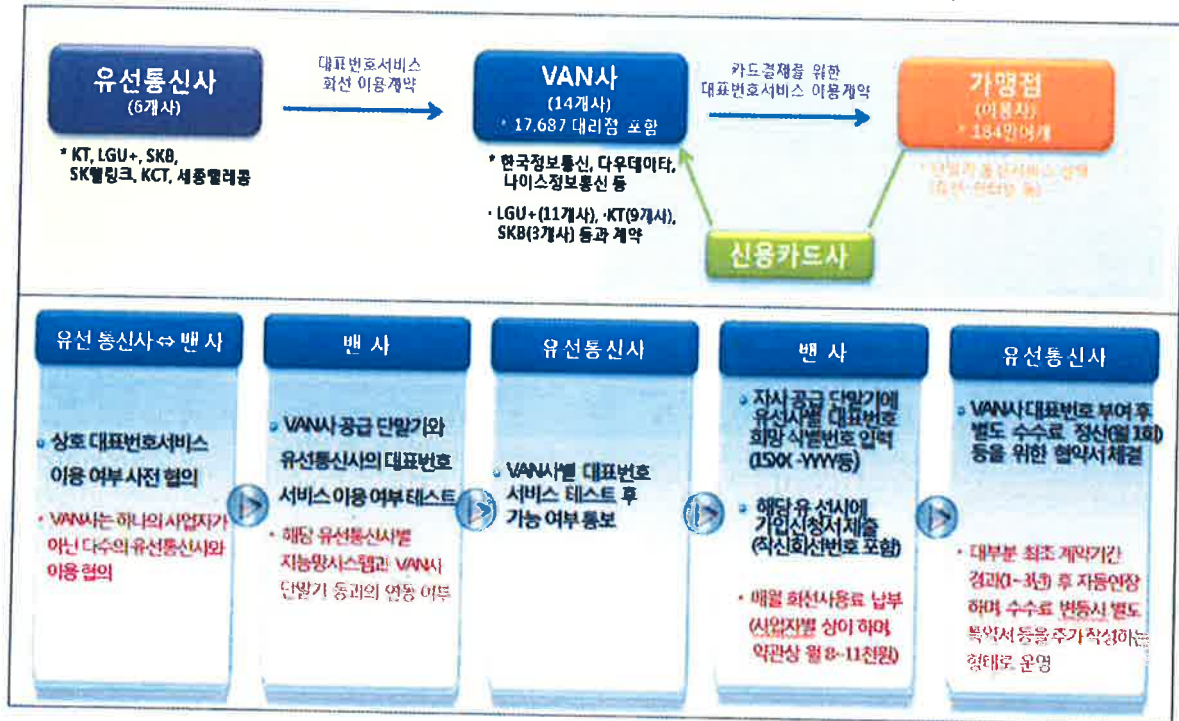
피심인은 카드 결제용 단말기 판매를 위한 대리점과 위탁(재위탁 포함)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카드 가맹점과 직접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17년 12월말 기준

1) '대표번호'란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신자(이용자)의 전화를 실제 수신자(가입자 :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연결해 주기 위한 가상의 전화번호(1588, 1544, 1600 등)로, 회선이용 가입자는 월정액 회선이용료(예, 회선당 8천원~1만1천원 등)를 납부하고, 발신자(이용자)는 대표번호 이용 시 시내·시의 통화료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납부

2) "영세상인, 유선전화 카드결제 할인요금제 이용 0명...있는 줄도 몰라" ('18. 1.17, 서울경제) 등

대리점(재위탁 포함)³⁾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⁴⁾할 때, 피심인과 계약되어 있는 카드 가맹점이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 관련 정보 조회 시에 발생하는 시내·시외전화서비스 기본요금 이외의 부가서비스 형태인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통신요금(39원/3분, 부가세 제외)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 참고 2 > 카드 결제서비스 관련 사업자별 계약 현황



아울러, 피심인은 (주)케이티, 세종텔레콤(주) 등 2개 유선통신사업자와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이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 관련 정보 조회 시에 발생하는 통화요금은 유선통신사업자가 각각 청구하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가맹점을 관리하는 등의 대가로 각각의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다는 내용의 협정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있다.

3)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2항은 전기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가 제1항 제5호의2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에 대하여 제52조 제1항과 제53조를 적용할 때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되어 있다.

4) 카드 가맹점과 임의의 가입 신청서(신용카드단말기 POS장비 등 계약서) 등을 통해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 안내 없이 단말기 요금, 카드결제 관리수수료 등의 사항만을 안내하고,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또한, 피심인은 대표번호서비스가 설정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카드 가맹점에 판매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서 2개 유선통신사업자와의 별도 협정을 통해 가맹점의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수수료 배분 등의 계약조건을 감안하여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카드 결제용 단말기에 2개 유선통신사업자별로 통화연결 순위(예시- 1번 A통신사, 2번 B통신사.....)를 설정하여, '17년 12월말 기준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호 나목은 이용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바목은 약정기간 만료와 관련하여 세부 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의2.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자명,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할부수수료, 보험료, 약정기간, 위약금, 손해배상, 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전체·개별 할인율 등의 약정 조건, 서비스 개시 전의 신청 철회권 행사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바.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정기간 만료일, 약정기간 만료 후의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 이후에 이용요금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해지(결합판매 구성상품의 일부 해지를 포함한다) 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실 등을 사전에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

※ 다만, '16. 1.27일 이전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나목. 4)에 해당한다.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된 사실

피심인은 대표번호서비스가 설정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결제 관련 정보 조회 시 발생하는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고지한 사실이 없다.

나. 피심인 주장 및 검토

피심인은 (1)유선통신사업자와의 제휴를 통해 가맹점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는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2)업무제휴 협정 등을 통해 유선통신사업자와 위탁(대리) 관계에 있으므로 고지 의무는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있고, (3)가맹점에 대한 대표번호서비스의 요금고지 의무는 대표번호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유선통신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심인의 주장 중 (1)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하고(제2호),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제6호),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고(제8호),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제12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피심인이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 설치한 카드 결제용 단말기는 단말기에 설정된 대표번호서비스 회선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기계로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에 해당하며, 해당 단말기에 통화연결 순위를 설정하여 가맹점이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피심인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

또한, 피심인 주장 중 (2)에 대해 살펴보면, 피심인이 유선통신사업자와 별도 체결한 '업무제휴 협약서 등'에는 가맹점 관리에 관한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가맹점이 단말기를 설치하는 경우 피심인이 여러 유선통신사업자의 대표번호서비스 발신번호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맹점에 설치함에 따라 유선통신사업자가 대표번호서비스 회선 트래픽을 높이기 위하여 피심인이 가맹점을 관리하는 결과 등에 대해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유선통신사업자와 가맹점 간의 이용계약 체결을 피심인이 대리하는데 따른 서비스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모집한 가맹점 정보를 유선통신사업자가 관리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 할 때 유선통신사업자와 피심인의 관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2항에 의한 대리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피심인 주장 중 (3)을 살펴보면, 유선통신사업자는 피심인과의 별도 협정에 따라 대표번호서비스 과금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카드 가맹점과의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하는 책임은 유선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대표번호서비스 회선을 카드 결제용 단말기 제공과 연계하여 카드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가맹점을 모집하고, 해당 가맹점과 직접 대표번호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피심인에게 있다.

다. 판단

피심인이 카드 가맹점과 카드결제를 위한 대표번호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하면서, 가맹점이 시내·시외전화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처리 할 때 시내·시외전화 서비스의 기본요금 이외에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에 따른 부가통신요금으로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이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이용자의 계약 체결 내지 지속적인 서비스의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용요금 및 이용조건 등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나·바목) 【'16. 1. 27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제50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나목.4)】 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IV. 시정조치

1.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9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아래와 같이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가. 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직접 판매하거나, 위탁 대리점(재위탁 포함)을 통해 카드 가맹점과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카드결제호 처리 시 부과되는 '대표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고, 관련 가입 신청서류의 교부 및 보관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라 제1항 내지 제2항의 시정조치를 명령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화면(전체화면 6분의 1 이상 크기의 팝업 창)을 통해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거나 클릭을 하여 볼 수 있는 연결 문서로 5일간(휴업일 포함) 게시하여야 한다. 이때, 구체적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공표문안(예시) >

㈜○○○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저희 회사(○○○)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카드 가맹점과 카드 결제용 단말기와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이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에 '대표번호서비스의 이용요금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이사 ○○○

4. 이행계획서의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호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 IV. 1. 내지 3.의 시정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이행 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호에 따라 각 시정조치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제5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 상한액 및 산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 과징금 상한액 및 기준 금액

가. 과징금 상한액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과징금 상한액은 같은 법 제53조제1항, 시행령 제46조제1항 [별표6]에 의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6-11호,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다.

나. 기준금액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경우 위반 전기통신사업자의 위반기간동안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으로 하되, 관련매출액 산정 시 서비스의 범위는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 제공 상대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위반행위가 해당 부가 서비스 등 특정 영역에 국한하여 발생하고, 그 영향도 그 영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영역으로 한정하여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유선통신사업자와 협정을 통해 가맹점이 이용한 ‘대표번호서비스’ 정산액으로 한다.



(금액단위 : 백만원)

※ 자료출처 : 피심인 영업보고서 및 제출자료

< 기준금액 부과기준율 및 중대성 정도 판단 시 고려 사유 >

피심인은 조사대상기간('12.10월~'17년도말) 인 지난 5년동안 대표번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중요 정보인 이용요금에 대해 이용자에게 한번도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이용환경 및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였다. 특히, 3분당 39원(부가세 제외)이 부과되는 '대표번호서비스'를 이용하던 가맹점의 통신요금 경감을 위해 '12년 10월부터 건당 24원(부가세 제외)이 부과되어 종전 보다 저렴한 '1639서비스'를 도입하였으나, 피심인이 가맹점에게 명확하게 대표번호서비스 이용요금에 대해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않아 가맹점 입장에서는 신규 서비스와 비교하여 선택할 수 없어 '1639서비스'의 도입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관련 서비스 이용자인 가맹점의 피해규모가 광범위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기준금액 부과기준율은 세부기준 제4조제1항 [별표1]에 따른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부과 기준금액은 피심인의 관련 매출액 (원단위 절사)의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으로 한다.

다. 필수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가중사유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 최근 3년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제7조제1항 [별표3](Ⅱ.3)에 따라 부과기준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감경한다.

라. 추가적 가중·감경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별표4]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고려하여 필수적 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감경한 으로 한다.

2. 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 및 과징금 부과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1호)에 따라 상기와 같이 단계별로 산출한 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별표6]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인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1'인 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적용하여 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최종 과징금 산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최종 과징금으로 결정한다.

< 최종 과징금 부과 내역 >

㉠관련 매출액 (3년 연평균)	㉡기준금액 (㉠의 2%)	㉢필수적 가중· 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10%감경)	㉣추가적 가중· 감경을 거친 금액(㉢에서 20%감경)	최종 과징금 (㉠의 1%, 상한액)

※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실무요령'에 따라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최종 과징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십만원 미만은 절사

VI. 결론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법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내지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장 이 효 성 (인)

부위원장 허 욱 (인)

위원 김 석 진 (인)

위원 표 철 수 (인)

위원 고 삼 석 (인)